보훈요양원운영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 1
제 2조 (명칭) ····· 1
제 3조 (적용범위) ····· 1
제 4조 (용어의 정의) ····· 1
제 5조 (주소지 이동) ····· 2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6조 (구성) ····· 3
제 7조 (기능) ····· 4
제 8조 (회의개최) ····· 4
제 9조 (보고사항) ····· 4
제 10조 (회의의 공개 및 보존) ····· 5

제 3 장 입소 및 퇴소

제11조 (정원) ····· 5
제12조 (이용대상) ····· 5
제13조 (모집방법) ····· 5
제14조 (입소신청) ····· 5
제15조 (입소신청 구비서류) ····· 5
제16조 (보조금 신청안내 등) ····· 6
제17조 (입소 우선순위) ····· 7

제18조 (입소의 제한) ····· 7
제19조 (입소계약) ····· 7
제20조 (계약해지) ····· 8
제21조 (입소제한 및 계약해지에 의한 퇴소) ····· 9

제 4 장 이용료

제22조 (이용료) ····· 9
제23조 (이용료 감면) ····· 9
제24조 (입소보증금) ····· 9
제25조 (이용료 수납) ····· 9
제26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 10

제 5 장 서비스 관리

제27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 10
제28조 (이용계약 당사자 등의 권리와 의무) ····· 11
제29조 (특별한 보호) ····· 12
제30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13
제3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13
제3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 14
제33조 (기록 및 보존) ····· 14

제 6 장 비용 청구 및 정산

제34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14
제35조 (보훈기금 청구 및 정산) ····· 14

제 7 장 후원금 관리

제36조 (후원금의 범위) ····· 15
제37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 15
제38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 15
제39조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15
제40조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15

부 칙 ····· 16

보훈요양원운영규정

제 정 2008. 7.24 일부개정 2015.12.30
일부개정 2009. 9.29 일부개정 2017. 1. 4
개 정 2010. 7.30 일부개정 2018. 6. 5
개 정 2010.12.27 일부개정 2019. 8.30
일부개정 2011. 5.20 전부개정 2020.12.29
일부개정 2011.10. 1 일부개정 2022. 5.11
일부개정 2012. 6. 7 일부개정 2023. 7.10
일부개정 2013. 7. 5 일부개정 2023. 8.16
일부개정 2014.10.24 일부개정 2024. 9.30
일부개정 2015.11. 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41조제1항제12호, 제18호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훈요양원(부설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과 노인성질환 등을 가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 명칭은 (시·군·구 지역명)보훈요양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훈요양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직원인사 및 복무규정, 급여, 회계, 물품관리 등)은 관계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규정 등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란 보훈요양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기요양 입소시설 입소자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로 구분한다.
2. “보호자”란 보훈요양원 입소자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말

한다.

3. “이용료”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말한다.
4.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중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노인 등 노인성 질환자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말한다.
6. “의료급여수급자”라 함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7. “감경대상자”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4.9.30>
8.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3.7.10>
9. “주간보호센터”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호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주소지 이동)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훈요양원 소재지 외 타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이는 보훈요양원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거나, 시·군·구 간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훈요양원으로 주소지를 이동한 입소자는 계약해지 즉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보훈요양원장은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입소자의 권

익향상과 시설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보훈요양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3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4.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훈요양원장
2. 입소자 대표
3.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4. 직원 대표
5. 보훈요양원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임이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 복지, 요양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내용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보훈요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입소자와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훈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부재시 보훈요양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

2. 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보고사항) 보훈요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의 공개 및 보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소 및 퇴소

제11조(정원) ① 보훈요양원의 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한 입소정원으로 한다.

② 대상별 입소비율은 별표1과 같으며,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신청 현황에 따라 입소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할 수있다.

제12조(이용대상) 보훈요양원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기요양(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주간보호센터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13조(모집방법) 보훈요양원장은 홈페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기관을 홍보하고,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 입소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입소신청) 보훈요양원 입소신청은 입소대상자가 한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입소신청 구비서류) ① 입소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훈요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개정 22.5.11>

② 입소 순번 도래로 입소 안내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소 전까지 보훈요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병원)
2. 사전건강조사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필요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경우는 1부)
5. 기타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1부.

③ 보훈요양원장은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신청안내 등) ① 보훈요양원장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소확인서를 발급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훈요양원장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관할 보훈(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보훈요양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보훈요양원장은 매년 10월말까지 요양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입소자 명단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1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④ 보훈요양원장은 요양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입소자가 퇴소를 한 경우 퇴소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입소 우선순위) ① 입소 우선순위는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한다.

② 주간보호센터의 입소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접수순위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입소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입원진료 관계로 퇴소하였다가 재입소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④ 보훈요양원장은 대상별 입소순위부를 매월 1회 작성하여 보훈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보훈요양원 개원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하며, 입소비율은 대상별 신청현황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

1.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본인이 유족 및 배우자보다 우선하고, 상이자가 비상이자보다 우선한다.
2. 국가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는 희생자(사망자) 유족이 기타(상이자, 비상이자) 유족 및 배우자보다 우선한다.

⑥ 이 밖에 입소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입소의 제한) 보훈요양원장은 법정전염성 및 감염성 질환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9조(입소계약) ①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보호자)와 의무, 권한, 책임,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보훈요양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3.8.16>

④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4. 주보호자

⑤ 기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정산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 사망, 입원 중 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4.9.30>

1.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 문제행동으로 타 입소자와 시

설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될 때 <개정 24.9.30>

2.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계약의사 등이 장기요양보다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개정 24.9.30>
4.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5. 입소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6. 보호자가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을 위반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
8. 급여제공 항목 외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 시설종사자의 업무 및 타 입소자의 권리보호에 심대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신설 24.9.30>

제21조(입소제한 및 계약해지에 의한 퇴소) ①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간보호 입소자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보훈요양원에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보훈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3.8.16>

제 4 장 이용료

제22조(이용료)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와 비급여수가로 구분하며, 이용요금은 별표3과 같다.

제23조(이용료 감면) ① 관할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승인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 의료급여수급자와 감경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각각 감면 받는다.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별표4에 의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 국비(보훈기금)로 부담한다.

③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80%를 감면한다. 단,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를 감면한다.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진료를 목적으로 퇴소하였다가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후 퇴소전의 감면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입소보증금) 입소자에 대한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이용료 체납 등에 의한 미수채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 계좌 확보 또는 보증증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이용료 수납) ① 입소자나 보호자는 그 달의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훈요양원장은 제22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훈요양원장은 다음 달 서비스 계획 및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CMS·신용카드·계좌이체 중에서 선택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변경된 방법으로 수납한다.

제26조(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보훈요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본 규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입소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국가유공자 자격변동 등으로 감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 5 장 서비스 관리

제27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원장은 입소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훈요양원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소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소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3. 건강 및 간호관리
4. 기능회복훈련
5. 시설환경관리

④ 입소자가 요청하여 외부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 이외에 급여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8조(이용계약 당사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시설이용 계약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준수 의무

② 제19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보훈요양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입소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③ 제19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보호자는 입소자의 계약, 보훈요양원 이용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입소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3.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장기요양등급 갱신 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4. 입소자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5.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7.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ㆍ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의무

8. 입소자가 복용하는 약품 제공의 의무

9.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제29조(특별한 보호) ①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보훈요양원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④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30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훈요양원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장은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보훈요양원장은 보훈요양원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④ 보훈요양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입소시설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훈요양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4.9.30>

제31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보훈요양원장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보훈요양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보훈요양원 또는 타 입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보훈요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시설에서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사(自然死) 하였을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32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보훈요양원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 및 보훈요양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훈요양원장은 보훈요양원 내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기록 및 보존) 시설 내 모든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

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사본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제 6 장 비용 청구 및 정산

제34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청구요령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4.9.30>

제35조(보훈기금 청구 및 정산) ① 국비부담금(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비용과 장비보강, 시설개보수비를 청구대상으로 한다.

② 소요예산에 대한 요구 및 지급절차는 국가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③ 감면비용 등의 요구는 매월말 기준 집행액을 정산하여 다음월 15일까지 국가보훈부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3.7.10>

④ 시설개보수비 등 요구 및 지급은 회계연도 개시 9개월 전에 요구하여야 하며, 반영된 예산은 요구에 따라 분기별 지급 후 정산한다.

제 7 장 후원금 관리

제36조(후원금의 범위) 보훈요양원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①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

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보훈요양원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수입·지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기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7.30>

이 규정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3 정관 일부변경]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③ (관계규정의 개정) 보훈요양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관 제41조제1항제17호”를 “정관 제41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 칙 <11.5.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4호, 11.10.26>

이 규정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4호, 12.6.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0호, 13.7.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3호, 14.10.24>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1호, 15.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417호, 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입소자(2015년 12월 31일 신청자까지 포함한다)는 제23조 및 별표3,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감면요율을 적용한다.

대 상 별	감면요율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본인부담금의 전액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특수임무부상자	〃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
• 국가유공자 유족	〃
• 보훈대상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제외)	〃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족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족	〃
• 참전유공자	〃

부 칙 <시행번호 제440호, 1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 비수급권자의 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비수급권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번호 제469호, 18.6.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497호, 19.8.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530호, 20.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549호, 22.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10 시행번호 제569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일부변경]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보훈요양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표 4를 첨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 5와 같이 한다.

㉑ ~ ㊷ (생 략)

부 칙 <시행번호 제573호, 2023.8.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601호, 2024.9.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상별 입소비율

(제11조제2항 관련)

대 상 별		입소 비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 인	70%
	유족 및 배우자 등	20%
지역주민 및 일반인		10%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별표 2] <개정 22.5.11>

보훈요양원 개원시 대상별 입소 우선순위

(제17조제1항 관련)

대상별	입소 우선순위	
	기 본 순 위	세 부 순 위
국가유공자 등 본인	1. 상이자	①독립유공자 ②전상군경 ③공상군경 ④4·19혁명부상자 ⑤공상공무원 ⑥국가발전특별상이자 ⑦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⑧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⑨특수임무부상자
	2. 비상이자	⑩재일학도의용군인 ⑪무공수훈자 ⑫보국수훈자 ⑬참전유공자 ⑭4·19혁명공로자 ⑮국가발전특별공로자 ⑯특수임무공로자
유족 및 배우자 등	3. 희생(사망)자 유족	⑰독립유공자유족 ⑱전몰군경유족 ⑲순직군경유족 ⑳4·19혁명사망자유족 ㉑순직공무원유족 ㉒국가발전특별 순직자 유족 ㉓5·18민주화운동사망자 유족 ㉔특수임무사망자유족
	4. 기타 유족 및 배우자 등	㉕상이자 유족과 배우자 ㉖비상이자 유족과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㉗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공로자 유족과 배우자 ㉘특수임무부상자 및 공로자 유족과 배우자
지역주민 등	5. 지역주민 등	지역주민 및 일반인 등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별표 3] <개정 22.5.11>

장기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제22조 관련)

1. 급여 부분

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총액의 20%

나. 주간보호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총액의 15%

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구 분	장기요양급여비용		
	구분	건강보험공단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의 60%	장기요양	92%	8%
	주간보호	94%	6%
본인부담금의 40%	장기요양	88%	12%
	주간보호	91%	9%

2. 비급여 부분

가. 장기요양 비급여비용 이용료

○ 식사비용(식사 3식, 간식 2식 기준)

(기준일수 : 30일)

구 분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전주	원주
월요금	270,000원	297,000원

※ 경관영양 유동식은 별도 소요비용(재료비) 본인 부담

○ 상급침실료

(기준일수 : 30일)

구 분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1인실	2인실	1인실	2인실
월요금	300,000	210,000	600,000	360,000

○ 위생 및 간호재료비 : 기저귀,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외유교통비, 욕

창처치비 등은 별도부담 없음

나. 주간보호 비급여비용 이용료

○ 7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전주)

(기준일수: 20일)

구 분	식사비용 (점심 1식, 간식 1식기준)	식사비용 (점심 1식, 간식 2식기준)
월요금	65,000원	80,000원

○ 원주보훈요양원

(기준일수: 20일)

구 분	식사비용(점심 1식, 간식 2식기준)
월요금	86,000원

※ 경관영양 유동식은 별도 소요비용(재료비) 본인 부담

※ 개별적 희망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기호품 등 본인부담

[별표 4] <개정 22.5.11, 23.7.10, 24.9.30>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부담금 감면 요율

(제23조 관련)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 애국지사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의 80%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의 80%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애국지사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의 4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별표 5] <개정 22.5.11> <삭제 24.9.30>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2.5.11, 23.7.10, 24.9.30>

<제15조 관련>

입소신청서 (□장기요양보호 □주간보호센터)

입소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상구분	□ 일반 □ 보훈(보훈번호 :)			
	급여자격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입소자와의 관계
	주 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보호자	
				부보호자	(성명: /관계:)
희망부	침 실	□ 1인실 □ 2인실 □ 4인실			
신청자 현재상태	주 질 환	□치매 □뇌졸중 □당뇨 □파킨슨 □심(신)장질환 □기타질환			
	식 사	□ 일반식 □유동식(죽) □미음 □L-튜브 □ 당뇨식			
	배 변	□ 화장실 □기저귀 □소변줄 □간이변기 □ 장루			
	보 행	□ 자립 □지팡이 □워커 □보행기 □휠체어 □침대			
	기타질환	□ 투석 □욕창 □기관지절개	유병기간	년 개월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요하는 상태 등 자세히 기록(치매 주 증상, 중풍 마비된 쪽 등) :				

구비서류	입소신청시	1.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입소심의시	1. 감염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결핵,간염,매독,피부질환 등) ※ 입소일 기준 한달 이내 검사받은 진단서 2. 사전건강조사표 1부 3. 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필요 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5. 기타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1부. ※ 등본 등은 입소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필요

상기와 같이 ( )보훈요양원에 입소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 )보훈요양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3.8.16>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1.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를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자격조사
 -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본인부담금 감면지원,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보훈요양원 요양 프로그램 운영 등 요양서비스 지원(게시판운영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정보	ㅇ입소자 및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ㅇ입소자의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국가(독립)유공자증, 국가(독립)유공자유족증 포함), **장기요양급여내역**(요양등급, 간호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내역, 프로그램 참여·일상생활 모습 등 사진 등), **급여자격**(건강보험·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 생계곤란, 감경여부), **건강진단서, 병증** 등 현재상태,

(*)주민등록번호, 건강진단서 등 민감정보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하여 수집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목적 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급여 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서비스기간, **본인부담금, 경감구분** 등)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기간**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재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수집 이용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수집 이용합니다

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입 소 자 : 생년월일 :

위 동의인(또는 대리인) 관 계 : 성 명 : (인/서명)

( ) 보훈요양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전 건강조사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작성자		**관계**		**전화번호**	
거주 상황	[ ] 재가생활( ) [ ] 시설입소( ) [ ] 병원 입원{병원명 : _____ / [ ] 일반병실 [ ] 중환자실				
질병	[ ] 치매 [ ] 중풍 [ ] 치매 + 중풍 [ ] 고혈압 [ ] 당뇨병 [ ] 호흡곤란 [ ] 관절염 [ ] 요통, 좌골통 [ ] 골절, 탈골 등 [ ] 난청 [ ] 시각장애 [ ] 심장질환 [ ] 신장질환 [ ] 위장질환 [ ] 간질환 [ ] 파킨슨 [ ] 암 (진단명 :) [ ] 기타 (진단명 :) ※ 해당되는 질병과 질병에 따른 복용약이 있을 경우 모두 체크해주세요.				
수술 여부	[ ] 무 [ ] 유 (수술명 및 부위 : 연도 :)				
신체 상태	**식사**	[ ] 일반식 [ ] 유동식(죽) [ ] 미음 [ ] 비위관 [ ] 위루관			
	배변	[ ] 화장실 [ ] 기저귀 [ ] 장루			
	배뇨	[ ] 화장실 [ ] 기저귀 [ ] 소변줄(도뇨관) [ ] 요루			
	활동상태	[ ] 자립 [ ] 지팡이 [ ] 성인용보행기 [ ] 휠체어 [ ] 침상생활			
간호 처치	[ ] 흡인 [ ] 상처관리 (당뇨발, 욕창, 기타) [ ] 호스피스 간호 [ ] 기타 :				
행동 변화	[ ] 무 [ ] 유 (①망상 ②배회 ③공격성 ④수면장애 ⑤기타:_____)				
침실 선택	[ ] 1인실 [ ] 2인실 [ ] 4인실 ※ 입소자 배정시 참고 사항이며 배정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퇴 소 신 청 서

입소자	성 명			
	입소기간			
신청인 (보호자)	성 명		관계	
퇴소사유				
인계물품				
종결상태	□ 병원입원 □ 재가 □ 사망 □ 타 요양시설입소 □ 기타			
비용정산	□ 미납금액(원) 확인자 : (인) ※ 비용정산 후 퇴소 가능합니다.			
연계기록지	□ 보호자 수령 □ 우편 발송(발송처:) ※ 위와같이 연계기록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입소자의 퇴소를 신청하며,
연계 기록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원인계인(직원) _____(인)

신원인수인(보호자) _____(인)

○○보훈요양원장 귀하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결재	담 당	과 장	부 장	원 장

입소자, 서비스 제공자 및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에 의함. 이하 같음)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table>
<tr><th colspan="6">계 약 당 사 자</th></tr>
<tr><td rowspan="5">입소자</td><td>성 명</td><td></td><td>등 급
(인정번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연락처</td><td colspan="2">자택)</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유공자자격</td><td colspan="4">☐ 감면 [☐ 80%감면 ☐ 60%감면 ☐ 40%감면 ☐ 감면없음]
☐ 일반인</td></tr>
<tr><td>급여자격</td><td colspan="4">☐ 건강보험 [☐ 감경없음 ☐ 60% 감경 ☐ 40%감경]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td></tr>
<tr><td rowspan="2">서비스
제공자</td><td rowspan="2">시설명</td><td rowspan="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요양원장</td><td>시설종류</td><td colspan="2">노인요양시설</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053-606-3000</td></tr>
<tr><td>주 소</td><td colspan="4">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123-23</td></tr>
<tr><td rowspan="4">보호자</td><td>성 명</td><td></td><td>관 계</td><td colspan="2">‘입소자’의 ( )</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연락처</td><td colspan="2">자택)
연락처 1)
연락처 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d colspan="2">급여비용명세서 제공동의
☑ 예 ☐ 아니오</td></tr>
</table>

제1조 【 목 적 】 대구보훈요양원(이하 '서비스 제공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주보호자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입소자'의 당월 이용료는 다음달 2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퇴소하는 달의 이용료는 퇴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5일 이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 CMS자동이체 / □ 계좌입금 / □ 신용카드)로 하되,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납부방식 변경 요청 시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⑥ 시설급여 본인부담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고시 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따른다.

1. 2026.1.1부터 적용하는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1~5등급 대상자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급여	노인요양시설(1일) - 케어비율[1] 2.1:1 이상	93,070	86,340	81,540	81,540	81,540
	노인요양시설(1일) - 케어비율 2.1:1 미만	88,520	82,120	77,540	77,540	77,540
	치매전담실 가형(1일)	-	96,950	89,400	89,400	89,400

비급여				
상급침실료(1인실/1일)	10,000	간식비(1식)	750
상급침실료(2인실/1일)	7,000	경관식(1식)	실비정산
식재료비(1식)	2,500	이·미용료(월)	포함

2. 외박을 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산정(복귀일은 100%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비고
일반	20%	-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건보공단)	8%	• 일반 본인부담금 20%의 60% 감경
본인부담금 40% 감경대상자(건보공단)	12%	• 일반 본인부담금 20%의 40%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8%	-
기초생활수급권자	0%	• 생계·의료급여 동시 수급자만 해당

4. 2026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별도납부)

진료구분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12%)	감경(8%)	의료(8%)	기초(0%)
초진비용(18,840원)	3,760원	2,260원	1,500원	1,500원	0원
재진비용(13,370원)	2,670원	1,600원	1,060원	1,060원	0원

1) ‘22.10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입소자/요양보호사 비율)에 따른 수가 이원화로 매월 적용 수가변동 가능

⑦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면혜택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국가보훈부 보훈자격 전산망 조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실시간 조회·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 확인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table>
<tr><th>대상구분</th><th>감면대상</th><th>보험급여</th><th>비급여</th></tr>
<tr><td rowspan="2">• 애국지사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td><td>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td><td>본인부담금
80%</td><td rowspan="5">감면
없음</td></tr>
<tr><td>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td><td>본인부담금
80%</td></tr>
<tr><td rowspan="2">•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애국지사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자녀제외)</td><td>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td><td>본인부담금
60%</td></tr>
<tr><td>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td><td>본인부담금
40%</td></tr>
<tr><t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 참전유공자</td><td>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td><td>본인부담금
60%</td></tr>
</table>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관련 세부 적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감경대상자는「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40% 또는 60%를 감면 받는다.

⑨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입소자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이용료(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생계급여 수급자 중 지자체 보장시설 수급자로 승인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서 부담한다(상급침실료 제외))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위생재료비(다만, 외출·외박시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프로그램비 등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구 분	부과 기준
상급침실료	1일당 1인실 10,000원/ 2인실 7,000원
식재료비	1끼당 2,500원
간식비	1회당 750원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2]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수납
- 상급침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가능

*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실비 수납기준 시행(2008.6.20./보건복지부)

⑩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본 규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입소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국가유공자 자격변동 등으로 감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4조 【 계약자 권리와 의무 】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1.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준수 의무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입소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③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2. ‘입소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3.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4. ‘입소자’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5.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7.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의무
8. ‘입소자’가 복용하는 약품 제공의 의무
9.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입소자’의 계약해지

1. ‘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해지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입소자’와 ‘보호자’의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 문제행동으로 타 ‘입소자’와 ‘시설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연간 60일 이상 입원(합산)으로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때 (단,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60일 이상 입원기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함)
5. ‘입소자’ 및 ‘보호자’의 계약자 의무(제4조 관련) 미이행, ‘입소자’ 요양생활 중 시설규칙 위반으로 요양원 운영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될 때
6.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단,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치료목적이 아닌 생활 지원을 통해 보살펴드리는 장기요양시설 고유기능을 초과함은 물론,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뛰어넘는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할 때

제6조 【 퇴소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상당한 기간(적어도 1개월 이상, 단, 제5조제2항제1호로 인한 계약해지 의 경우 긴급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와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또는 '입소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퇴소 예정일 기준 이용료 납부액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안내받은 이용료를 퇴소일 기준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① '입소자'는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1. 귀중품, 현금 등 도난 도는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
2. 가위, 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품
3.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4. 기타 단체생활에 소지하기 어려운 물품

② '서비스 제공자'의 승낙 없이 '입소자'와 '보호자'가 반입한 개인물품을 분실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입소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서비스 제공자'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외출·외박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입소자'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입소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외박은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가능하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서비스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이나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공동 생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이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서비스 제공자’가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이상이 있을 시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보호자’로 하여금 ‘입소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로서 동행토록 안내하고, ‘보호자’는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⑦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보호자’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서비스 제공자’는 1일 3식 및 간식 2회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경관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관급식 비용은 별도 소요비용(재료비)을 부담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입소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입소자'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단체복의 착용 】 '입소자'는 개인 옷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피부질환, 와상상태 유지 등으로 개인옷 착용이 곤란한 경우
2. 치매증상으로 요양원 이탈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유치도뇨관, 경관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단체복을 입을 것을 희망하는 경우
5. 기타 안전 및 위생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으로 한다.

④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⑤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 【 기록 및 공개 】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보훈요양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타 ‘입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시설에서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사(自然死) 하였을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20조 【 특별한 보호 】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④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21조 【 고충대응 】

① ‘입소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고충대응 책임자, 연락처 등을 확실히 하여 성실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가 고충처리를 신청했을 때 이를 이유로 ‘입소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2조 【 입소자의 주소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훈요양원 소재지 외 타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이는 보훈요양원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거나, 시·군·구 간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훈요양원으로 주소지를 이동한 입소자의 ‘보호자’는 계약해지 즉시 입소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23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입소자 (인)

서비스제공자(시설장) 대구보훈요양원장 (인)

보호자 (인)